

표목통제를 위한 전거레코드작성방안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Guideline of Authority Record for Heading Control

정 옥 경(Ok-Kyung Chung)*

목 차

- | | |
|----------------------------|------------------------|
| 1. 서 론 | 4. 표목통제를 위한 전거레코드 작성방안 |
| 2. 표목통제의 정의 및 필요성 | 4. 1 전거레코드의 구성요소 |
| 3. AACR2R과 KCR2의 표목부의 체계문제 | 4. 2 전거레코드의 작성방안 |
| 3. 1 AACR2R | 4. 3 전거표목의 표기문자 |
| 3. 2 KCR2 | 5. 결 론 |

초 록

이 연구는 표목통제를 위한 전거레코드작성의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AACR2R과 KCR2의 표목부의 체계문제를 파악하여 그 개선점과 GARE에 제시된 표목통제를 위한 전거레코드 작성의 지침을 분석하였다. 또한 효율적인 검색을 위하여 동명이인과 동명이단체의 구별방안과 주체명일람표의 작성방안을 제시하였다. 전거레코드를 통일적이고 일관성 있게 작성하기 위한 기준을 별도로 마련하는 것보다는 편목규칙의 표목부에 통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ABSTRAC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a rational guidelines of authority record for heading controls. It analyzes the headings of AACR2R and KCR2. To efficient retrieval, It suggests distinction of different persons and different corporate bodies of the same name and subject list. It also investigates the problems and suggests the possible improvements for control of headings. The rules for heading control retains the frame from headings of cataloging rules. The guideline for heading controls will be integrated in the rules for headings.

키워드: 전거레코드, 전거통제, 전거표목, 표목, 표목통제

* 시립인천전문대학 문헌정보과 교수(okjung@icc.ac.kr)
논문접수일자 2002년 2월 28일
게재확정일자 2002년 3월 20일

1. 서론

표목통제는 서지레코드의 표목에 사용되는 개인명, 단체명, 회의명, 지명, 통일서명, 주제명을 통일적이고 일관성 있게 처리하여 검색의 효율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 서지레코드의 접근점으로 사용되는 표목은 그 형식과 구조가 다양하기 때문에 MARC레코드의 교환 및 통합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 따라서 서지교환을 위해서는 전거레코드를 별도로 관리하고 서로 연결시켜야 할 필요가 생기게 되었으며 각국에서는 전거화일시스템을 개발하여 전거데이터 교환을 위한 표준화를 시도하고 있다.

또한 1999년에 KS X 6006-4로 지정된 전거통제용 한국문헌자동화목록형식도 각 필드에 해당하는 표목선정 및 그 형식에 관한 규칙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도서관마다 나름대로의 규칙을 정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전거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서지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면 서지데이터베이스의 통합시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효율적인 정보검색을 위해서는 하나의 표목을 설정하는데 있어서도 정확한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통일된 표목을 선정하고 기타 필명, 이명, 아호, 이주제명, 이서명이나 대등서명 등으로 이용자들이 검색할 수 있도록 참조를 작성해야 한다. 이와 같은 작업이 표목의 통제이며, 이 표목의 통제에 대한 기록들을 전거표목 또는 전거레코드라고 한다. 이러한 전거레코드를 표준화하기 위한 작성기준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전거레코드 작성에 통일성과 정확성을 기하고 표준화를 위한 도구로서의 기능을 수

행할 수 있는 표목통제를 위한 전거레코드 작성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정립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본고에서는 표목통제의 정의와 필요성을 언급하고, AACR2R과 KCR2의 표목부 용어 및 체계의 문제점을 파악한 후 표목통제를 위한 전거레코드의 작성에 필요한 기본요소를 제시한 GARE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표목통제를 위한 전거레코드의 작성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표목통제의 정의 및 필요성

표목에는 저자명 이외에 단체명, 지명, 주제명, 서명, 참조 등의 표목이 있으며, 동일한 주제에 대해서도 주제명이 다른 경우가 있고, 동일한 책에 있어서도 이서명이나 대등서명이 있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효율적인 정보검색을 위해서 하나의 표목을 설정하는데 있어서도 정확한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통일된 표목을 선정하고, 기타 필명, 이명, 아호, 또는 이주제명, 혹은 이서명이나 대등서명 등으로 이용자들이 검색할 가능성이 있는 다른 표목에서는 이미 선정된 표목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참조를 작성해야 한다. 이와 같은 작업이 표목의 통제이며, 이 표목의 통제에 대한 기록을 전거저록(authority entry) 또는 통제레코드(control records)이라고 한다.

Babara B. Tillet에 의하면 "아마도 표목의 통제(control of headings)를 묘사하는데 접근점통제(access point control)라는 용어가 전거통제(authority control)보다도 덜 혼동될 것"

(1989, 4)이라고 말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현재 '전거통제'라는 용어가 흔히 사용되고 있으나 이것은 '표목의 통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접근점통제'라는 용어보다도 혼돈을 일으키게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IFLA에서 제정한 '전거저록과 참조저록을 위한 지침' (*Guidelines for authority and reference entries = GARE*)을 면밀히 살펴보면 전거통제는 직접적인 표목의 통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통제된 표목'에 대한 전거를 통제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므로 표목의 통제에 대한 부수적인 통제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그 내용상으로 보아 GARE의 표제를 '표목에 대한 전거저록과 참조저록을 위한 지침' (*Guidelines for authority entries of headings and reference entries*)이라고 생각하면 보다 쉽게 이해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그 용어가 어떻게 쓰였던 전통적인 편목에 있어서도 표목의 통제는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저자명을 표목으로 선정하는데 있어서 그 저자가 필명이나 이명이나 아호 등을 가지고 있는 경우, 지명이 포함된 표목에 있어서 그 지명이 변경된 경우, 단체명표목에 있어서 그 단체명이 변경되는 경우 등, 이미 선정된 표목으로 이용자들이 접근(또는 검색)하도록 보라참조나 도보라참조를 작성하던 것이 바로 '표목의 통제'라고 말할 수 있다. 다만 그 동안 '표목의 통제'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을 뿐이지 그 내용은 표목을 통제하는 것이었다.

실제로 예를 들면 AACR2R의 제22장 인명표목(Heading for Persons)부터 참조(Reference)까지는 그것이 기본표목이던 부출표목

이던 상관없이 여러 가지의 표목과 그 형식 중에서 보다 확실하고 합리적인 표목을 선정하기 위해서 이를 통제하는 규정들이다. 그리고 KCR2 제2장에서는 '표목형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표목의 형식'만을 규정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의 표목과 그 형식 중에서 보다 확실하고 합리적인 표목을 선정하고 이에 선정되지 않은 기타의 표목에서는 이미 선정된 표목으로 참조하도록 지시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이 AACR2나 KCR2 기타의 편목규칙 등, 전통적인 편목규칙에 있어서는 보라참조나 도보라참조를 작성하는 경우 그들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자료(이른바 전거)를 제시하지 않았을 뿐이다.

그러나 도서관의 편목작업이 자동화됨에 따라 컴퓨터의 신속하고 정확한 자료처리능력을 바탕으로, 보다 적극적이고 정확한 정보통제를 요구하게 됨으로서 표목선정에 관련된 근거자료와 작성기관이나 시간까지도 밝히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하여 AACR2의 표목부에 대한 규칙과는 별도로, 국제도서관협회연맹(IFLA)에서는 1984년에 목록에 있어서 표목의 통제를 위한 지침서로서 '전거표목과 참조저록을 위한 지침' (*Guidelines for authority and reference entries = GARE*)이라는 책자를 편찬하였다. 그리하여 1961년에 ICCP에서 채택된 '편목원칙에 관한 성명' (Statement of (Cataloging) Principles)이 '기본표목의 선정'을 위한 국제적인 지침이었다면, GARE는 '모든 표목에 대한 전거통제'를 위한 국제적인 지침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GARE는 편목규칙과는 별도의 독립적인 것이 아니

라 편목규칙의 표목부를 위한 국제적인 지침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Tillett 에 의하면 “전거통제(authority control)는 고유하고 일관된 표목에 대해 다양한 형식의 적절한 참조를 제공하고, 편목규칙과 규칙해설에 주어진 조항에 따라 관련된 표목에 연결하는 것”(1989, 2)이라고 한다.

이와 같이 ‘표목통제’와 ‘전거통제’는 AACR2R 등의 편목규칙에 의해서 다양한 표목군 중에서 유일하고 일관된 표목이 선정되면, GARE에 따라서 선정된 표목에 대한 전거레코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보라참조나 도보라참조 등을 작성하여 관련된 표목에 연결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종래에는 편목규칙에 의해서 절반정도의 ‘표목통제’가 이루어 졌다면, 이제 GARE에 의해서 ‘표목통제’가 완성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표목통제는 목록의 식별 및 집중기능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표목 또는 접근점(heading and access point)을 통일시켜 줌으로써 검색의 효율을 높이고자하는 의도에서 시작된 것이다. 검색과 집중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표목 또는 접근점을 통일적으로 일관성 있게 작성하여야 한다.

표목통제는 전거파일을 참조하여 서지파일의 표목이나 접근점으로 사용되는 이름과 주제명, 통일서명 등의 근거가 되는 표목의 형식을 일관성있게 사용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표목통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용자는 저자나 단체명, 지명, 주제명, 서명 등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그 모든 형식을 모두 파악하여 별도로 검색해야만 할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용

자가 필요한 모든 이형(異形)을 다 검색하지 못해서 소장된 자료를 검색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므로 전거레코드 작성시 표목을 통제할 수 있는 표준화된 규칙이 필요하다.

표목은 단순히 목록의 검색을 위한 키로서 뿐만 아니라 도서관간의 혹은 국제간의 교류와 통합을 전제로 하는 MARC환경에서 표목통제를 위한 표준화 문제가 더욱 중요시 되고 있다. 표목 또는 접근점의 통일을 위하여 목록담당자의 임의적인 판단이나 적용가능성을 허용하지 말아야 됴에도 불구하고 KCR3와 KORMARC기술규칙에서는 이를 허용하므로서 도서관간의 목록정보의 교류 및 통합을 어렵게 하여 편목비용의 증대와 더불어 여러면에서 목록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게 된다.

그러므로 서지레코드에 있어서 표목으로 사용될 개인명, 회의명, 단체명, 지명, 주제명, 통일서명 등의 통일적인 작성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정보를 수록한 전거레코드의 집합인 전거화일에 의해 표목으로 사용될 여러 가지 사항의 기재형식과 방법을 통제하고 이에 따라 서지레코드에 표목을 부여하는 표목통제 즉 전거통제가 필요하다. 이러한 표목 또는 전거통제의 핵심은 정보검색에 효율성을 기하고 MARC파일의 통합 및 교환에 필요한 접근점의 통일된 기준 확립에 있다고 할 수 있다.

3. AACR2R과 KCR2의 표목부의 체계문제

3. 1 AACR2R

AACR2와 AACR2R에 있어서 표목부에 대한 규정의 내용과 순서에 있어서는 합리적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표목부의 편(part)과 장(chapter)의 제목에 쓰인 용어와 그 체계에 있어서는 불합리한 점이 보인다. AACR2R 제21장의 선행규칙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장의 규칙들은 한 목록에 있어서 그 아래 서지기술이 기입되는 접근점(표목)의 선정에 관한 규칙들이다. 이 규칙들은 이러한 접근점들 중에서 하나를 기본표목으로 선정하고, 나머지 접근점 들은 모두 부출표목으로 하는데 대한 지침을 주는 것이다.”(AACR2R, 21.0A1) 그런데 맨 앞에 제시된 간략목차를 보면 다음과 같다.

- Part II
- Headings, Uniform Titles, and
References
- 21 Choice of Access Points
 - 22 Heading for Persons
 - 23 Geographic Names
 - 24 Heading for Corporate Bodies
 - 25 Uniform Titles
 - 26 References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Part II의 제목을 “Headings, Uniform Titles, and References”라고 했는데, AACR2R의 기술부에 대한 Part I의 제목은 “Description”이라고 했으므로, 아마도 표목부에 대한 제목은 표목(headings) 또는 접근점(access points)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자동화목록에서는 발행지나, 발행기관이나, 발행연도 등 ‘기술부’에 기록된 사항이

거의 모두 검색의 접근점이 될 수 있는데, 목록에서 말하는 접근점은 이용자들이 접근할 가능성이 많은 여러 가지 저자명, 서명, 주제명 등 종래의 기본표목과 부출표목 그리고 참조를 의미한다. 일본목록규칙 1987년판 개정판(일본도서관협회목록위원회 1994)과 중국편목규칙 수정판(중국도서관학회분류편목위원회 1995)에서는 이미 그렇게 사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Part II의 제목은 표목(Headings)이라고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둘째, “Chapter 21 Choice of Access Points”는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기본표목(main entry headings)을 선정하기 위한 규칙을 다루는 장인데, 접근점의 선정이라는 장제목은 이에 부합되지 않는다. 접근점은 기본표목 뿐만 아니라 부출표목이나 참조 등도 포함될 수 있고, 기타 ‘기술부’에 기록된 거의 모든 사항이 검색의 접근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Chapter 21은 ‘Choice of Main Heading’(기본표목의 선정)이라고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AACR2R에서는 기본표목을 “main entry heading”(기본저록의 표목), 부출표목을 “added entry headings”(부출저록의 표목)(AACR2R, p.311)라고 했는데, 이것은 종래의 카드목록시대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카드목록에서는 기본표목이던 부출표목이던 동일한 여러 개의 기술사항(entries) 위에 각각의 표목이 붙어서 각 표목어의 어순에 따라 배열되게 되었으므로, 그것이 논리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자동화목록에서는 단일의 기술사항(entry)이 어떠한 표목이던 여러 개의 표목(접근점)을 가질 수 있으므로, 기본표목

(main heading), 부출표목(added headings)이라고 하는 것이 그 의미가 선명하다고 판단된다.

셋째로 제22장 인명표목(heading for persons)부터 참조(reference)까지는 모두 그것이 기본표목이던 부출표목이던 상관없이 여러 가지의 표목과 그 형식 중에서 보다 확실하고 합리적인 표목을 선정하기 위한 규정들이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Heading for persons는 저자가 개인저자인 경우 저자명은 단 하나의 이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본명 이외에 이명, 별명, 필명, 아호 등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중에 어느 것을 표목으로 정할 것인지, 그 이름을 어떠한 언어로 또한 어떠한 형식으로 표기할 것인지, 이용자들이 나머지의 여러 가지 이름으로 검색하게 될 경우를 대비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2) Geographic names는 지명이 표목요소로 포함되었을 경우, 그 지명이 몇 번이고 변경되었다면 그들 중의 어느 지명을 표목으로 선정하고 그것을 어떤 형식으로 표현할 것인지, 기타의 지명은 어떻게 조치를 취할 것인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3) Headings for corporate bodies는 단체저자인 경우 그 단체명도 변경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단체명 중에서 어떤 단체명을 표목으로 정하고 그것을 어떤 형식으로 표현할 것인지, 나머지의 단체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4) Uniform titles는 “서명의 여러 가지 표현(예를 들면 판본 번역본)이 여러 가지의 서명으로 나타났을 경우, 한 저작에 대한 모든 목

록저록을 함께 모으기 위한 수단을 제시한다. 또한 한 통일서명은 그 서명이 편목되는 그 자료의 본서명과 다르게 알려져 있을 경우, 한 저작에 대한 확실성을 제시한다.”(AACR2R 25.1A)

5) References는 이상과 같이 인명표목이던, 지명이 포함된 표목이던, 단체명표목이던 여러 가지 가능성 있는 표목 중에서 선정되지 않은 표목을 이미 선정된 표목으로 참조하도록 지시하는 것이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Heading for Persons” 이하는 표목의 형식이나 어떤 요건의 규정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들이 목록을 효율적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표목을 통제(control)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Chapter 22의 제목은 Control of Headings(표목의 통제)라고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그리고 Headings for persons 이하는 Control of headings의 하위개념이므로 여기에서는 그 목차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더 논리적이고 체계적이라고 판단된다.

Chapter 22 Control of Headings

22.1 Headings for Persons

22.2 Headings for Geographic Names

22.3 Headings for Corporate Bodies

22.4 Uniform Titles

22.5 References

3. 2 KCR2

KCR2에 있어서 표목부의 규정내용은 소략

한 점이 있으나 그 체계와 순서는 합리적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표목부를 2대구분한 것은 좋았으나, 제1장의 제목을 “기본기입의 선정.” 제2장의 제목을 “표목형식”이라고 한 것은 그 내용에 부합되지 않는다. 특히 “기입”이라는 용어는 일본어에서 전용된 것으로 우리나라의 어의에 맞지 않고, 또한 영어로는 entry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에 적절하지 못하므로, “기입”이라는 용어 대신에 “표목”이라는 용어가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를 “기본표목의 선정”이라고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또한 제2장에서는 표목의 형식만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기본표목이던 부출표목이던 상관없이 여러 가지의 표목과 그 형식 중에서 보다 확실하고 합리적인 표목을 선정하기 위한 규정들이다. 이를 다시 요약해서 말하면 모든 표목을 통제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제2장에서는 “표목의 통제”라고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KCR도 AACR2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제1편은 “기술부”로 하고, 제2편은 “표목부”로 하되, 그 제1장은 “기본표목의 선정”, 제2장은 “표목의 통제”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4. 표목통제를 위한 전거레코드 작성방안

4.1 전거레코드의 구성요소

전거레코드란 채택표목과 그 표목의 결정근거가 되는 정보원이나 표목형의 정당성을 나타내는 데이터를 기술하고 그 채택표목으로

혹은 채택되지 못한 표현으로부터의 보라참조, 도보라참조, 설명참조를 기술하며, 표목형의 속성이나 참조의 근거가 되는 정보를 기술한 기록이다. 이러한 전거레코드의 집합체가 전거화일이다. 이러한 전거레코드는 표목에 관한 정보와 함께 표목자체를 기록하기 위하여 작성된다. 따라서 이 표목이 목록이나 기계가 독 서지화일내에서 통일되어 사용되며, 출판물내에 있는 어떤 형식에서 서지레코드내에 있는 표목으로 안내해 주는 도구이다. 따라서 표목이 되는 개인명, 단체명, 회의명, 주제명, 지명, 통일서명에 대한 전거표목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다만 주제명에 대해서는 ‘주제명표목표’나 ‘시소러스’에서 해결할 수 있다.

한편 GARE에 의하면 이상과 같이 통제된 표목(controlled heading)을 authority heading (전거표목)이라고 하고, 이 전거표목을 설정한 근거가 되는 기록을 authority entry (전거저록)라고 명명하고 있다. 그리고 “이 전거저록(authority entry)은 통일표목 이외에 가능한 한: 정보주기: 참조가 만들어진 모든 이형(異形)표목과 상관표목에 대한 기록(tracings); 참조한 자료원을 기록하는 주기 등: 그 저록에 대해서 그 편목기관이 책임을 진다는 확인; 및 국제표준전거데이터번호(ISADN) 등을 포함한다”(IFLA 1984, 2)고 정의하고 있다.

전거저록의 구조에 대해서 말하자면 GARE의 서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는 “세 가지 구조를 나타낸다: 즉 전거저록, 참조저록, 일반 해설 저록이다. 전거저록은 특정한 개인이나 단체나 저작과 관련된 모든 서지적 저록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그 서지기관에 의해서

설정된 통일표목 뿐만 아니라 그 표목과 상관 표목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 한 정보주기도 포함될 것이며; 참조가 만들어지는 이형표목과 상관표목에 대한 tracings; 그 표목의 출처를 기록하는 편목자의 주기 등도 포함한다.” (IFLA 1984, xi) 우선 전거저록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전거저록의 예〉

Authority heading	British Columbia Youth Soccer Association
Information note	Name changed in 1977 from British Columbia Juvenile Soccer Association
See reference tracing	< B.C. Youth Soccer Association
See also reference tracing	<< British Columbia Juvenile Soccer Association
Source area	National Library of Canada/Bibliothèque nationale of Canada : AACR2 1981- 08-01
ISADN area	NLC/BNC 0011-A-0719
전거표목사항:	중앙대학교 · 문헌정보학과
정보주기사항:	1963년 3월 1일 중앙대학교 문리과 대학 도서관학과로 발족. 1965년 3 월 1일 문과대학으로 소속변경. 1973년 3월 1일 문리과대학으로 소속 변경. 1988년 4월 문과대학으로 소 속 환원. 1989년 3월 1일 문헌정보학 과로 명칭 변경.
도보라참조표목사항:	<< 중앙대학교 · 도서관학과
편목자주기사항:	문헌정보학보 제5집: 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창설 30주년 기념특
집. 1993

정보원사항: The National Central Library:
KCR2, 1999-05-12

ISADN사항: ISADN

둘째, GARE의 서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저록의 제2유형인 -- 참조저록--은 검색자로 하여금 그 리스트의 저록에 대한 그의 최초의 시점으로 사용될 하나의 이형표목에서 그 리스트나 목록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설정된 통일표목으로 지시하기 위해서; 혹은 그에게 하나의 통일표목으로부터 그에 관련된 다른 표목으로 지시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예전의 특정한 단체명의 형식에서 그 후의 단체명의 형식으로 지시하기 위해서 전거리스트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목록, 서지, 색인 등에 있어서도 기본적인 것이다.”(1984, xii) 참조저록에 대한 하나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참조저록의 예〉

Reference heading	British Columbia Juvenile Soccer Association
Information note	Name changed in 1977 to British Columbia Youth Soccer Association.
Instruction phrase	See also the Later heading:
Uniform heading	>> British Columbia Youth Soccer Association
참조표목사항: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정보주기사항:	한국학술진흥재단과 한국첨단학술 정보센터의 통합명

통일표목사항: 단체별로 발표한 작품은 다음을 보
라 » 한국학술진흥재단 » 한국철
단학술정보센터

셋째, “일반설명주기 저록은 사실상 참조저
록의 특수한 유형이다. 일반 설명저록은 전거
서목에 있어서, 혹은 목록이나 서지에 있어서,
통일표목으로 수용되지 않은 형식을 사용한다.
그러나 그 차이점은 일반 설명적 참조는 탐색
자에게 특별한 통일표목으로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표목류에 지시한다는 점
이다. 일반 설명적 참조는 탐색자들이 찾아야
할 표목류형의 예를 제시한다.”(IFLA 1984,
xiii) 일반설명주기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일반설명주기의 예〉

Explanatory heading	Department of . . .
Information note	Departments are entered under the name of the body or government to which they are subordinate (e.g., University of Reading, Department of Geography; United States, Department of the Interior, etc.)
설명표목사항:	주식회사
정보주기사항:	단체명의 관칭을 특별히 구별하 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 고는 생략한다. 따라서 관칭을 생 략한 해당 단체명의 표목을 사용 한다.

“GARE의 구조는 . . . 좀 복잡하고, 그 용어는

대부분 새로 만들어지거나 혹은 당면한 목적
에 알맞도록 기존의 용어로부터 각색되고 변
경된 것으로 때로는 좀 난해하다.”(IFLA
1984, 2) 우선 앞에서도 이미 논급한 바와 같
이 전거통제(authority control)라는 용어가
바로 그러한 예가 될 것이다.

한편 현재 GARE는 기본적으로 “개인명에
대한 표목; 회의와 지역적인 기관명을 포함한
단체명에 대한 표목; 무저자명 고전에 대한 통
일서명” 등 세 가지 유형의 전거만을 다루고
있다. 그리고 GARE에서는 주제명표목에 대한
전거; 총서에 대한 전거; 법률적 및 종교적 저
작, 음악작품, 하나 이상의 서명으로 발행된 개
인저자에 의한 저작 등을 다루기 위한 통일서
명에 대한 전거는 당분간 제외되었다(1984,
ix-x). 그후 1993년에 주제명전거에 대한 지침서
인 ‘Guidelines for Subject Authority and
Reference Entries’를 발표하였다.

또한 GARE에서 하나의 주기로 밝힌 바와
같이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미진한 부분이
있다(1984, xiii-xiv).

첫째로, 현재의 지침서는 프린트 및 마이크
로프린트로 된 전거저록과 참조저록의 표시만
다루려고 시도된 것임을 주시해야 한다. 이 지
침서에서 요약설명된 구조는, 비록 그것이 필
연적으로 기계가독 포맷의 설계에 중요한 결
실을 가져오겠지만, 기계가독의 전거레코드를
위한 구조로 직접 전환하려고 시도되지는 않
았다. 다만 GARE의 실무집단은 현재 기계가
독의 전거 레코드를 위한 구조에 관한 작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재구성되고 있다.

둘째로, 현재의 GARE에 전거레코드에 국
제표준전거데이터번호(ISADN)를 포함하려

하고 있으나 그 형식이나 구조에 대한 세부사항은 마련하지 않았다. 또한 GARE의 실무집단은 특히 기계가독 레코드의 자동처리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그러한 번호의 필요성을 도모했다. 그러나 그러한 번호가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권한이 위임된 기관에 의한 번호매김이 어떻게 통제될 것인지 하는 세부사항이 아직 성취되지 않았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GARE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지침서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GARE는 유일한 국제기구의 전문학자들에 의해서 편찬된 것이고 또한 앞으로 지속적인 연구에 의해서 보완될 것이므로 우리는 이 지침을 충실히 따라야만 할 것이다.

4. 2 전거레코드의 작성방안

효율적인 정보검색을 위해서는 하나의 표목을 설정하는데 있어서도 정확한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통일된 표목을 선정하고, 기타 필명, 이명, 아호, 이주제명, 이서명이나 대등서명 등의 검색이가능하도록 참조를 작성해야 한다. 이와 같은 작업이 표목의 통제이며, 이 표목에 대한 기록들을 전거레코드라고 한다. 이러한 전거레코드를 통일적이고 일관성 있게 작성하기 위한 기준이 마련된 AACR2R과 같은 편목규칙이 필요하다.

서지레코드의 접근점으로 사용되는 표목의 형식과 표기법이 표준화된 전거레코드의 작성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전거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서울대학교도서관, 연세대학교도서관, 이화여자대학교도서관과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국가 단위의 전거레코

드의 작성기준이 없기 때문에 도서관마다 내부지침을 따로 만들어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우리 나라 대표도서관인 국립중앙도서관의 전거데이터 작성기준을 보면 입력형식은 '전거통제용 KORMARC형식'을, 표목부의 기술규칙으로는 한국목록규칙 제2판 및 제3판의 표목부분을 참고로 한 내부지침에 따르고 있다(이치주, 이재선 2001, 137).

Abraham J. Yu는 Authority Control for the 21st Century: Towards a New Paradigm이란 논문에서 "서지레코드의 접근점으로 사용되는 표목의 형식과 표기법이 표준화된 전거레코드 작성기준에 대한 규정이 없어 필요한 정보에 접근이 성공적이지 못하며, 출판물이나 지역에 따라 표기된 인명의 형식이 다양하기 때문에 서지데이터베이스의 표목과 전거파일에 구축된 표목이 서로 달라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찾지 못하게 되므로 반드시 표준화된 전거레코드의 작성기준이 필요하다"(1999, p.2)고 주장하면서 21세기의 전거통제는 다국어온라인고유명전거파일(Multilingual Online Name Authority File), 다기능온라인고유명전거파일(Multifunction Online Name Authority File), 적시에 완전하고 유일한 탐색이 가능한 온라인고유명전거파일(Complete, Unique, and Timely Online Name Authority File)과 웹기반온라인고유명전거파일(World Wide Web-based Online Name Authority File)이 구축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고 했다. 이와 같은 기능을 다 갖춘 전거파일이 되기 위해서는 전거레코드 작성기준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제정되어야 한다.

첫째, 한·중·일 동양인명 및 단체명은 자

국어로 읽어 한글로 표기하고, 서양인명 및 단체명은 알파벳으로 표기한다. 이는 파일관리의 편리성과 채택표목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상호참조를 이용하여 영어 및 로마자 형식으로서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고유명전거레코드에 분류번호와 주제명표목을 표기하고, 동명이인의 식별을 위하여 인명전거레코드에 간단한 서지적데이터를 부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적시에 완전하고 유일한 정보에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서지데이터베이스에 바뀌었거나, 정정되었거나, 또는 갱신된 고유명의 서지레코드를 갱신하도록 하여야 한다.

넷째, 웹기반 온라인 전거파일을 구축하기 위해서 온라인 전거파일, 온라인종합목록, 온라인주제명표목들이 링크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전거레코드에 효율적으로 접근하여 확인하기 위한 웹기반 인터페이스가 준비되어야 하며, 채택표목으로 든 또는 상호참조 표목으로 든 로마자 및 자국어로된 표목형식에 탐색이 가능하도록 상호연계되게 하여야 한다.

Barnhat가 “정형화된 전거레코드의 작성기준이 없어 중복된 많은 정보가 서지레코드에 입력되는데 이것은 자원의 낭비와 컴퓨터기술의 비효율적인 이용이다(1999, 2)”라고 하였듯이 저작관련데이터와 서지데이터가 일관성있게 입력되지 않아 불완전하고 불명확한 검색을 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거레코드의 작성기준이 마련되어 한 저작에 표기된 모든 형식이 한곳에 모여지고, 표목통제를 위한 여타의 전거레코드들이 연계

되어 관련 저작들을 한 곳에서 검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따라서 각종 표목의 통제를 위한 전거레코드 작성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4. 2. 1 인명표목

표목통제를 위한 전거형을 선정할 때 각 도서관이 직면하게 되는 또 하나의 심각한 문제는 인명표목통제를 위한 전거레코드의 작성이다. AACR2R과 같이 표목의 선정과 그 형식에 대한 규칙이 완비된 미국과 같은 경우는 문제가 없겠지만 30년이상 된 한국목록규칙 제2판에 의존해야 하는 우리 나라 도서관의 경우에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오동근 2001, 9). 인명은 목록작성자에 의해 고유의 이름을 선택했을 때 서지의 세계에서 과연 고유한 이름인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고유하지 못하면 생몰년을 추가하거나 완전형으로 기술하거나 저자가 전공하고 있는 분야의 주제를 추가하거나 하여 고유한 것으로 만들 수 있다(최석두 1993, 239). 특히 한국인명은 동명이인이 많아 통일적이고 일관성이 없이 선정되게 되면 검색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적시에 원하는 정보를 검색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다. 우리나라의 성씨는 동음성이 상당히 많아서 한자로는 전혀 다른 성인데 한글표기로는 동일한 성이 된다. 한글로만 표기된 인명은 성의 구별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인명표목에 있어서는 성명의 한글표기 다음에 그에 해당하는 한자인명을 기입해서 이에 따라 다시 체계적으로 배열해야만 각각의 저자명이 개별화 될 수 있다. 그러므로 한국인의 인명에 대한 한글표기만으로는 각각의 인명이 개별화 될 수 없기 때문에 각 저작자의 문헌이 일정

한 순서에 따라 한 자리에 정렬되지 못하고 무질서하게 분산될 수 밖에 없다. 그 원인은 인명을 다만 한글의 가나다순으로만 배열하고 그 다음은 서명의 가나다순으로 배열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저자명을 통하여 간략정보를 검색했을 때 동일저자의 저작이 일정한 순서로 나타나 있지 않고, 모두 서명의 가나다순에 따라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의 문헌에 대한 상세정보를 검색하자면 동음이명이나 동명이인의 그 많은 저작들을 일일이 찾아서 자기가 필요한 자료인지 아닌지 여부를 검토해야 하므로 많은 시간을 낭비하게 된다. 더구나 앞으로 축적되는 문헌의 양이 많으면 많아 질수록 검색의 효율성은 점차 떨어질 수 밖에 없다.

KCR2 44에 보면 동성동명의 저자는 생몰년으로 구별한다. 만일 생몰년을 알 수 없거나 또는 생몰년만으로서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역조명(국적), 직업, 세계(世系) 등을 원괄호로 묶어 부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한국도서관협회 1966, 34). 이와 같은 방법은 서구식 용법에 따른 것이다. 목록을 작성하는 입장에서는 동명이인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되지만 이용자에게는 크게 도움을 주지 못할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이용자들은 저작자들의 생몰년이나 저자의 직업을 미리 알고 있을 가능성이 없으므로 이용자의 식별요소가 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용자 편의의 전거데이터베이스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나라의 동명이인을 구별하기 위한 한징어의 부기순서 및 방법이 제시된 인명전거레코드의 작성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앞서 발표한 인명표목통제를 위한 전거레코

드 작성방안(정옥경 2001, 272-273)을 보면

첫째, 우리나라의 인명사전 및 각종 사전류를 보면 인명 다음에 한자를 부기한 뒤에 생몰년을 부기하고 있다. 모든 사전류가 이 순차를 따르고 있음은 인명 식별의 관용이 그렇게 굳어져 있음을 입증한다. 한자 문화권에 있는 한·중·일 삼국에 있어서 한자인명의 한자는 로마자 사용국에 있어 서구인명의 spelling이상으로 식별상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한자로 쓰여진 동양인의 인명은 표목에 있어서 한글로 표기한 다음 그에 해당하는 한자를 원괄호속에 묶어서 2차 식별요소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 이것은 사전류의 관용과도 일치되는 용법으로서 가장 합리적인 형식이라고 판단된다.

예: 김영수 (金永秀)

김영수 (金永洙)

둘째, 2차 식별요소인 한자까지 부기하여도 동명이인이 동일할 경우에는 3차 식별요소로 주제명을 부기한다.

예: 김영수 (金榮秀) 정치학

김영수 (金榮秀) 법학

이와 같이 주제명을 부기하므로써 검색시 정확률을 높여 주고 동일한 주제분야의 관련 정보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이때 주제명은 인명표목의 동명이인을 식별하기 위하여 부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제명표목작성에 기준이 되는 LCSH같은 주제명표목표가 아니라 인명표목 전반에 걸쳐서 주제명의 통

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정형화된 주제명일람표(정옥경 2001, 275)에 의하여 부기한 것이다. 기존의 주제명표목표를 여기에 적용할 경우 오히려 동일한 저자의 저작이 분산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셋째, 3차 식별요소까지 동일한 인명의 경우에는 4차 식별요소로 생몰년을 부기한다.

예: 김영수(金瑩洙) 국문학 1917-
김영수(金瑩洙) 국문학 1918-

넷째, 단 저자가 한글 이름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인명 다음에 바로 주제명을 부기하고 그 다음에 생몰년을 부기한다.

예: 김삿별 수학 1969-
한아름 물리학 1973-

이상과 같은 식별요소를 부기하므로써 이용자들이 찾고자 하는 저자의 저작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관련된 저작들까지 동시에 한 곳에서 검색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4. 2. 2 단체명표목

단체명은 어떤 특정활동을 위하여 조직된 개인의 집합체인 모든 단체에 적용된다. GARE에서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일시적인 집단은 물론 각종 회의나 집회, 탐험대, 전시회, 축제 등과 같은 행사도 이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단체명선거표목의 경우에도 단체명이나 지역의 관할기관명, 산하기관명과 같은 하위요소 또는 지명이나 일자, 회차, 단

체 및 관할기관의 유형 등과 같은 한정어를 필요에 따라 부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GARE, 1.1.1.3). 가능하면 이 규정을 따르는 것이 합리적이다. 단체명표목통제시 문제는 동명이단체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한자명을 식별요소로 부기한다.

예: Republican Party (III.)
Republican Party (Mo.)

신명여자고등학교 (대구)
신명여자고등학교 (인천)

민주당. 전당대회 (부산, 1975)

한국문헌자동화목록운영협의회 총회
(1차, 1983)

4. 2. 3 지명표목

지명은 전거파일의 중요한 구성요소이며, 고유명 또는 단체명표목의 한정어로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왔다. 특히 지방정부기관에 부가사항으로 또는 동명이단체를 구별하는데 한정어로 사용한다. 기존의 몇몇 편목규칙에 보면 지명의 표기는 자국어(를) 원칙으로 한다고 정해져 있다. KCR3에는 표목부에 대한 규칙이 없지만 KCR2에서는 우리 나라나 기타 동양인명의 경우 한글로 표기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당연하다. ICCP의 제12조항에 의하면 '그 나라에서 통용되는 관례에 의해서 결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AACR2R의 규칙 22.3B4에서는 '22.3B1-22.3B3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모든 인명의 경우에는 개인의 거주 및 활동

국의 참고정보원에서 가장 자주 사용되는 형식을 선정한다'고 되어 있다(IFLA 1971, xiii-xviii).

AACR2R에서는 지명의 모든 부가사항은 괄호 속에 넣어 작성하고 있다. 모든 지명의 식별요소로 한정어를 부가하며, 해당 지명보다 더 큰 단위의 지역명을 괄호안에 표기하므로써 어느 나라 어느 지역인지 구별이 용이하다.

예: Lucca (Italy)
Paris (France)
Seoul (Korea)

둘이상의 동명의 장소를 구별할 때에는 단어나 구를 사용한다.

예: Villaviciosa de Asturias (Spain)
Villaviciosa de Csrdoaba (Spain)

이와 같은 단어나 구를 사용하여 구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 괄호 속에 더 큰 장소명 앞에 적절한 더 작은 장소명을 부기한다.

예: Friedberg (Bavaria, Germany)
Friedberg (Hesse, Germany)

Saint Anthony (Hennepin County, Minn.)
Saint Anthony (Stearns County, Minn.)

어떤 도시내에 지역의 장소를 식별하기 위해서는 더 큰 장소명 앞에 더 작은 장소명을

부기한다.

예: Hyde Park (Chicago, Ill.)
Chelsea (London, England)

이와 같이 지명표목통제를 위한 레코드 작성기준이 마련되므로써 지명으로서의 접근이 용이하고 검색율이 높아진다.

4. 2. 4 통일서명

통일서명은 "다양한 서명으로 나타난 한 저작이 목록을 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식별되도록 하는 특수한 서명이다." (ALA 1967, 347) 그리하여 통일서명을 위한 규정은 그 저작의 판본 번역본 등이 여러 가지 서명으로 나타났을 경우의 한 저작을 위해서, 그리고 그 서명이 표제지에 나타난 어법으로 인해서 애매할 경우 한 저작을 올바르게 식별하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목록의 표목을 함께 모으기 위한 수단을 제공한다.

AACR이전의 규칙에서는 통일서명을 주로 성서와 음악 자료에 적용하였다. 그러나 AACR에서 그 범위를 넓혀서 고전, 법전, 무저자명 저서, 번역서, 전집 필사본, 저작의 일부 등에 적용하고 있다. AACR2에서는 이를 더 보완하여 헌법, 법률, 재판소, 규칙, 국제조약 등과 종교에 관한 전례서에 있어서 부표목으로 사용되던 것을 통일서명으로 전환하였다. 따라서 형식부표목 없이 정부명이 부표목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게 되었다.

GARE에서는 무저자명고전의 통일서명만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아울러 통일서명이 표목인 경우에도 저작의 일부의 서명과 같은

하위요소 또는 언어나 판본, 일자 등과 같은 한정어를 부기하여 동일한 저작을 한 곳에 모이게 하여 검색의 효율성을 높이게 하고 있다.

통일서명 전거표목의 형식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예: 불전. 화엄경. 한국어
 성서. 신약. 마태복음. 한국어
 한국. 법령집
 춘향전

4. 2. 5 참조

전거레코드에서 두 번째로 주요한 부분이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참조 또는 참조부출지는 전거표목의 2자택일 또는 다른 형식이며, 전거표목에 대하여 어떤 특수한 관계를 갖는 관련표목인 경우도 있다. 따라서 어떤 하나의 표목은 하나의 참조를 갖는 경우도 있으며, 많은 참조를 갖는 경우도 있다. 각종 표목에 대한 규칙의 변화에 따라 참조지시의 변화는 필연적으로 편목규칙내에 제시되어야 한다.

편목규칙내에 참조의 형식을 자세하게 제시하므로써 도서관상호간에 목록정보교환시 혼란을 막을 수 있다고 본다. 앞으로 제정될 한국편목규칙에 다음과 같은 참조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할 것이다.

보라참조(see references): 전거표목으로 채택되지 않은 개인명, 단체명, 지명, 서명 등을 전거표목으로 안내 하기 위해서 작성하게 되는 이형표목에 대한 레코드로 사용된다.

이름-서명참조(name-title references): 한 개인의 저작이 둘이상의 다른 표목으로 작성된 경우에 그 저작의 특정판에 표기된 이름이

그 저작에 대한 표목으로 채택된 이름이 아닐 때 다음과 같이 이름-서명참조를 작성한다.

예: Halliday, Michael
 Edge of terror
 see York, Jeremy
 (Title page: The edge of terror / by Michael Halliday. 최신판은 Jeremy York으로 출판 경우임)

도보라참조(see also references): 전거표목에서 전거표목으로 상호참조를 안내하기 위해 작성하게 되는 상관표목에 대한 레코드로 사용된다.

설명참조(explanatory references): 보라참조 또는 도보라참조의 지시사항 보다 더 상세한 안내가 필요할 때 사용한다. GARE에 보면 설명참조저록을 정보주기사항, 정보원사항, 국제표준전거데이터번호사항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4. 3 전거표목의 표기문자

ICCP의 편목원칙의 제12항에 따르면, “한 개인저자의 인명이 여러개의 낱말로 이루어졌으면, 표목어의 선택은 가능한 한 그 저자가 속해 있는 나라에서 통용되는 관례에 의해서 결정하거나, 혹은 만일 이것이 불가능하면, 그 저자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언어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관례에 의해서 결정한다.” (IFLA 1971, xviii)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하나의 알파벳 목록저록에 있어서 첫 번째로 선택되는 개인의 인명에 대한 부분은, 특히

아프리카와 아시아에 있어서는, 여러가지의 국가적 언어적 관습에 따라 좌우되고, 또한 복잡성과 경청이 앞에 붙는 성을 취급하는데 있어서 많은 다양성이 있다. 그러한 인명에 대한 표목어의 선택은 기본적으로 그 저자가 속하는 국가의 관행에 기초를 두어야 한다”(IFLA 1971, 119)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 요건은 대체로 파리 규정 이후에 일반적으로 수용되었다.

그러나 AACR에서는 영어형식으로 확립된 인명을 가진 사람은 물론, 로마 알파벳문자가 아닌 문자를 사용하는 사람의 인명의 경우도 모두 로마자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예를 들면 AACR2R에서는 “그의 인명이 비로마자로 쓰여진 이름을 앞세워 기입된 사람에 대해서는 영어로 쓰여진 참고자료에 잘 정립된 인명의 형식을 선택한다”(AACR2R, 22.3C1)고 규정하고, AACR2에서는 “만약 성을 앞세워 기입된 사람의 인명이 비로마자로 쓰여졌으면, 그 편목기관에서 채택한 언어에 대한 표에 따라서 그 인명을 로마자화 한다”(AACR2, 22.3C1)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저작자체가 어떤 문자나 언어로 쓰여졌던 그 저자명이나 서명 등을 모두 알파벳문자나 영어만으로 표기하는 것은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가 없다. 더구나 이것은 ICCP의 편목원칙 중에서 “한 개인저자의 인명이 여러 개의 낱말로 이루어졌으면, 표목어의 선택은 가능한 한 그 저자가 속해 있는 나라에서 통용되는 관례에 의해서 결정한다”(IFLA 1971, xviii)고 하는 원칙에도 위배될 뿐만 아니라 이것은 영미권의 이용자들에게도 유용성이 적을 것이다. 왜냐 하면 알파벳 이외

의 다른 문자로 쓰여진 문헌은 이용자가 그 문자나 언어를 알지 못하면 그 문헌을 읽을 수가 없으므로, 표목에 쓰이는 언어도 그 원저자에 쓰여진 언어로 표기하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나라에서 발행되는 모든 문헌에 대한 목록의 서지기술사항이나 표목에 대한 기입문자는 우리 나라 사람을 위해서나 외국인을 위해서도 모두 한글로 표기하는 것이 유용하고 합리적이다. 그러나 저자명표목의 경우 배열의 기준이 되는 표목의 식별요소가 한글 인명만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전술한바와 같이 OPAC에서의 검색시 문제가 있다. 특히 OPAC의 간략정보에 접근한 이용자들의 경우 동명이인을 구별할 수 없다. 이용자가 찾고자 하는 저자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검색된 저자들의 상세정보를 하나 하나 다시 확인하여야만 되는 불편함이 있다. 이것은 어떠한 원칙이 없이 동명이인을 배열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동명이인의 식별요소를 위하여 한글명 다음에 한자명, 주세명, 생몰년순으로 한정어를 부기하여야 하며, 필요시에는 참조로 지시하여 동일한 저자의 관련저작들을 동시에 검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결 론

표목통제를 위한 표목의 형식에 통일성과 정확성을 기하고 표준화를 위한 도구로서 전거레코드 작성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연구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표목통제는 전거파일을 참조하여 서지파일의 표목이나 접근점으로 사용되는 고유명(인명, 단체명, 회의명, 지명)과 주제명, 통일서명 등의 근거가 되는 표목의 형식을 일관성 있게 사용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서지레코드에 있어서 표목으로 사용될 개인명, 회의명, 단체명, 지명, 주제명, 통일서명 등의 통일적인 작성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정보를 수록한 전거레코드의 집합인 전거파일에 의해 표목으로 사용될 여러 가지 사항의 기재형식과 방법을 통제하고 이에 따라 서지레코드에 표목을 부여하는 표목통제 즉 전거통제가 필요하다. 이러한 표목통제의 핵심은 정보검색에 효율성을 기하고 MARC파일의 통합 및 교환에 필요한 접근점의 통일된 기준을 확립하는데 있다.

둘째, 표목통제에 기준이 되는 표목부 체계를 분석한 결과 AACR2R과 KCR2의 '표목의 형식'에 대한 규정은 표목의 형식만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의 표목과 그 형식 중에서 보다 확실하고 합리적인 표목을 선정하기 위한 규정들이다. 이를 다시 요약해서 말하면 이용자들이 목록을 효율적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표목을 통제하는 것이다. 따라서 AACR2R의 제22장 인명표목(headings of persons)부터 제26장 참조(references)까지를 표목의 통제(control of headings)아래에 구분하고,

KCR2의 제2편은 표목부를 '표목의 선정'과 '표목의 통제'로 구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셋째, GARE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지침서라고 말할 수 있지만, 유일하게 국제기구의 전문학자들에 의해서 편찬된 것이고 앞으로 지속적인 연구에 의해서 보완될 것이므로 이 지침을 충실히 따라야 할 것이다.

넷째, 효율적인 정보검색을 위해서는 하나의 표목을 설정하는데 있어서도 정확한 근거 자료를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통일된 표목을 선정하고, 기타 필명, 이명, 아호, 이주제명, 이서명이나 대등서명 등의 검색이 가능하도록 참조를 작성해야 한다. 이와 같은 작업이 표목통제이며, 이 표목에 대한 기록들을 전거레코드라고 한다. 이러한 전거레코드를 통일적이고 일관성있게 작성하기 위한 기준은 다국어 온라인고유명전거파일, 다기능 온라인고유명전거파일, 적시에 완전하고 유일한 탐색이 가능한 온라인고유명전거파일과 웹기반온라인고유명전거파일이 구축될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체계적인 전거레코드가 작성되면 원하는 정보에 접근이 보다 더 쉬워지고 협동목록작성과 자원공유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어서 자원과 시간의 낭비를 줄일 수 있게 된다.

참 고 문 헌

- 국립중앙도서관. 1999. 『한국문헌자동화목록형식: 선거통제용』.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 오동근. 1994. 典據레코드의 작성에 관한 研究: 특히 GARE의 韓國的 適用과 관련하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27: 75-97.
- 오동근. 2000. 한국형 선거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1(4): 21-47.
- 日本圖書館協會目錄委員會, 編. 1994. 『日本目錄規則: 1987년판 개정판』. 동경: 일본도서관협회.
- 이치주·이재선. 2001. KORMARC를 활용한 저자명선거통제시스템: 국립중앙도서관의 사례를 중심으로. 『도서관』, 56(1): 128-155.
- 정옥경. 2001. 인명표목통제를 위한 선거레코드작성기준에 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2(4): 257-282.
- 최석두. 1993. 無典據시스템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25: 233-264.
- 中國圖書館學會分類編目委員會, 會. 1995. 『中國編目規則』. 수정판. 中國圖書館學會: 臺北, 民國84.
- 韓國圖書館協會, 編. 1966. 『韓國目錄規則』. 修訂版.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 한국도서관협회, 편. 1983. 『韓國目錄規則』, 3판: 記述 標目올림指示編.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1967. Anglo-American Cataloging Rules, North American Text. Chicago: ALA.
-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1978. Anglo-American Cataloging Rules, 2nd ed. Chicago: ALA.
-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1988. Anglo-American Cataloging Rules, 2nd, ed. Revised. Chicago: ALA.
- Barnhart, Linda. 1999. "Access Control Records: Prospects and Challenges," In: Authority Control. In: The 21st in the Century: An Invitational Conference, OCLC.[cited 1999.9.12]. <<http://www.oclc.org/oclc/man/authconf/barnhart.htm>>
- Gorman, Michael. 1992. After AACR2R: The Future of the Anglo-American Cataloging Rules. In: The Origins, Content, and Future of AACR2 Revised, ed. by Richard P. Smiraglia. Chicago: ALA: 89-94.
- Greever, Karen E. 1997. "A Comparison of Pre- and Post-Cataloging Authority Control", *Library Resources & Technical Services*, 41: 39-49.
- IFLA. 1984. Guidelines for authority and reference entries. IFLA International Programme for UBC.
- IFLA. 1971. Statement of Principles: Adopted at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ataloging Principles. Paris, Oct., 1961. Annotated edition with

- commentary and examples by Eva Verona. London: IFLA Committee on Cataloguing.
- Tillett, Barbara B. 1989. Considerations for authority control in the online environment. In: Authority control in the online environment: Considerations and practices, ed. by Barbara B. Tillett. New York, Haworth Press: 1-12.
- Yu, Abraham J. 1999. "Authority Control for the 21st Century: Towards a New Paradigm", In: Authority Control in the 21st Century: An Invitational Conference, OCLC. [cited 1999,9,12].
<<http://www.oclc.org/oclc/man/authconf/yu.htm>>